#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정 훈 의원 등 12인
나. 의안번호 : 제2557호
다. 제 안 일 : 2011. 9.20.
라. 회 부 일 : 2011.10.11.

## 2. 제안 이유

○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시장에게 통보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권한을 강화함.

## 3. 주요 내용

○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조정(안 제2조)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에게 통보토록 함

(안 제16조)

##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정 훈 의원님을 비롯한 12인의 의원께서 2011. 9.20. 발의하여 2011. 10. 11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서「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7인 이상)의 의원 연서로 발의한 의안이며 발의요건과 형식요건 그리고 성립요건을 갖추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의안입니다.

○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2010. 11. 25 우리시 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박영일 의원님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관련법”개정촉구 결의안의 내용 중 한 부분으로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행정사무감사기간을 동일하게 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의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따라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하여 그 일부가 수용되어 2011. 7. 14.「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의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개정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항임으로 조속히 개정·시행되어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끝으로, 안 제16조 또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외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개정사항임으로 조속히 개정·시행되어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